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 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 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되더라도 사실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가. 장기요양인정 등급 변경 시
 나.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계약 당사자]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의 계약 당시, 서비스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이 계약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구비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 1부(필요 시)
4. 신분증 사본 1부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 서비스 제공자(이하 "기관"이라 칭함)의 의무

1. 방문요양·빙문목욕 급여 제공 계약 내용 준수
2.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3. 급여 제공 중 '이용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4. 급여 제공 시간에 이용자의 주변 및 집기류 청결 및 유지 관리
5. 급여 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6. 이용 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 이용자(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 범위 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
4. 보호자의 인적 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 보호자의 의무

1. 이용자(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게 통보
5. 이용자(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입·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기타 '기관'의 협조 요청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비고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전액 본인부담
본인부담(15%)	376,935	349,680	229,230	211,455	181,335	주간보호	
본인부담(9%)	226,161	209,808	137,538	126,873	108,801		
본인부담(6%)	150,774	139,872	91,692	84,582	72,534		

■ 방문요양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2026. 01. 01 기준)

구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비고
급여 총액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1일 270분이상 월8일만 가능(1.2등급).3.4등급은 월4회 -1일 240분이상 1,2등급 가능 -1일 3시간 이하 근무시 일3회 방문 가능함 -공휴일50% 가산 -심야20시-06 이용 30%가산
본인부담금 (15%)	2,618	3,798	5,118	6,515	7,596	8,553	9,530	10,512	2018.08.01.,부터적용 -본인부담15%,9%,6%,
본인부담금 (9%)	1,570	2,278	3,070	3,909	4,557	5,131	5,718	6,307	
본인부담금 (6%)	1,047	1,519	2,047	2,606	3,038	3,421	3,812	4,204	
방문 횟수	144	99	73	57	49	44	39	35	1등급
	133	92	68	53	46	40	36	33	2등급
	87	60	44	35	30	26	*	*	3등급
	80	55	41	32	27	24	*	*	4등급
	*	*	35	27	23	21	*	*	5등급

※ 경우 1일 1시간 또는 1.5시간가족요양인 인정함. (1일 수가 24,580원. 33,120원)

■ 방문요양 서비스의 제공시각 및 휴일제공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4]의 급여비용의 30%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표2,4]의 급여비용의 50%가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급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가정내	비고
급여총액	88,990	80,230	50,100	요양보호사 2인 1회 60분이상
본인부담(15%)	13,349	12,035	7,515	
본인부담(9%)	8,009	7,221	4,509	
본인부담(6%)	5,339	4,814	3,006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가. 차량 이용 방문목욕(나-1, 나-2)

1)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로 인하여 특수욕조 등 장비를 이용한 목욕이 필요한 경우,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당해 기관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
3) "이동목욕용" 차량 내에서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나-1"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4)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나-2"의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나.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나-3)

1) 목욕 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령에 의해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시설을 갖춘 시설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③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 (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①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 조치하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개인별 장기 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 장기 요양 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 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시지로 이용명세서를 전송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의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계획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 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 보호자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 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의 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 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지]

1. 계약 해지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단될 경우
 ③ 기관 또는 계약 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④ 이용 계약체결 시 제시한 이용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판정된 경우
 ⑥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고의 미납하거나 연체한 경우
 ⑦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⑧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담당 요양보호사의 고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⑨ 이용자가 불안 또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요양보호사)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⑩ 이용자의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요양보호사)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⑪ 기타 이용자의 행동이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6년 1월 현재]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복지용구제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0% 추가산정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주 · 야간보호급여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 등급별 월 한도액 20%범위 내 추가 산정
20%추가	3,015,480	2,797,440	1,833,840	1,691,640	1,450,680	-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급여비용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방문요양 급여비용1 (방문당)

등급	급여비용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15%	9%	6%
30분이상	17,450	20	349,000	52,350	31,410	20,940
60분이상	25,320	20	506,400	75,960	45,570	30,380
90분이상	34,120	31	1,057,720	158,650	95,190	63,460
120분이상	43,430	25	1,085,750	162,860	97,710	65,140
150분이상	50,640	25	1,266,000	189,900	113,940	75,960
180분이상	57,020	25	1,425,500	213,820	128,290	85,530
210분이상	63,530	25	1,588,250	238,230	142,940	95,290
240분이상	70,080	25	1,752,000	262,800	157,680	105,120

가족요양60분(20일) 가족요양90분(31일)

분류	20일	30일	31일
급여비용	506,400	1,023,600	1,057,720
본부금(15%)	75,960	153,540	158,650

방문목욕 (방문당)

분류	목욕차(차량)	목욕차(가정)	차량미이용
급여비용	88,990	80,230	50,100
본부금(15%)	13,340	12,030	7,510

방문요양 급여비용2 (방문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공휴일	일요일	월 이용시간				본인부담금		
			50%+	30%+	월한도	이용횟수	총급여비용	남는비용	15%	9%	6%
1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2,512,900	31	1,346,330	1,166,5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2,512,900	31	1,569,840	943,060	235,470	141,280	94,19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2,512,900	31	1,767,620	745,280	265,140	159,080	106,05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2,512,900	31	1,969,430	543,470	295,410	177,240	118,16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2,512,900	31	2,172,480	340,420	325,870	195,520	130,340
2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2,331,200	31	1,346,330	984,8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2,331,200	31	1,569,840	761,360	235,470	141,280	94,19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2,331,200	31	1,767,620	563,580	265,140	159,080	106,05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2,331,200	31	1,969,430	361,770	295,410	177,240	118,16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2,331,200	30	2,102,400	228,800	315,360	189,210	126,140
3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1,528,200	31	1,346,330	181,8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1,528,200	30	1,519,200	9,000	227,880	136,720	91,15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1,528,200	26	1,482,520	45,680	222,370	133,420	88,95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1,528,200	24	1,524,720	3,480	228,700	137,220	91,48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1,528,200	21	1,471,680	56,520	220,750	132,450	88,300
4등급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1,409,700	31	1,346,330	63,370	201,940	121,160	80,77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1,409,700	27	1,367,280	42,420	205,090	123,050	82,03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1,409,700	24	1,368,480	41,220	205,270	123,160	82,100
	210분이상	63,530	95,290	82,580	1,409,700	22	1,397,660	12,040	209,640	125,780	83,850
	240분이상	70,080	105,120	91,100	1,409,700	20	1,401,600	8,100	210,240	126,140	84,090
5등급	90분이상	34,120	51,180	44,350	1,068,500	31	1,057,720	10,780	158,650	95,190	63,460
	120분이상	43,430	65,140	56,450	1,208,900	27	1,172,610	36,290	175,890	105,530	70,350
	150분이상	50,640	75,960	65,830	1,208,900	23	1,164,720	44,180	174,700	104,820	69,880
	180분이상	57,020	85,530	74,120	1,208,900	21	1,197,420	11,480	179,610	107,760	71,840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22시~06시 : 30% 가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X)

○ 일요일 : 30% 가산

○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 50% 가산